

# 2018학년도 주요대학 학교장 추천 방법 및 추천 인원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수능 최저	추천인원
서울대 (742명)	학교장추천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li> <li>· 과학탐구는 서로 다른 분야의 I + II, II + II 로 조합 (동일분야 I + II 인정 하지 않음.)</li> <li>· 탐구 2등급 충족기준 : 2개 과목 모두 2등급이내</li> </ul>	교당 2명
연세대 (정원 외 32명)	연세 한마음 (고른 기회)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대상자	1단계 : 서류 100 (일정배수선발)  2단계 : 성적 70 + 면접 30	· 최저 없음	교당 1명
고려대	학교장추천전형 I (400명)	1단계 : 학생부 교과 100 (3배수)  2단계 : 면접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 : 3개 영역 합 6 이내, 한국사 3 이내</li> <li>· 자연 : 3개 영역 합 7 이내, 한국사 4 이내</li> <li>· 의대 : 4개 영역 합 5 이내, 한국사 4 이내</li> <li>· 탐구 : 2개 과목 평균 등급 반영</li> </ul>	I, II 합산 교당9명
	학교장추천전형 II (1,110명)	1단계 : 서류 100(5배수)  2단계 : 1단계 성적 50 + 면접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 : 3개 영역 합 5 이내, 한국사 3 이내</li> <li>· 자연 : 3개 영역 합 6 이내, 한국사 4 이내</li> <li>· 의대 : 4개 영역 합 5 이내, 한국사 4 이내</li> <li>· 탐구 : 2개 과목 평균 등급 반영</li> </ul>	
서울시립대 (168명)	논술전형	1단계 : 논술 100 (4배수)  2단계 : 논술 60 + 학생부교과40	· 최저 없음	재학생 11명  졸업생 7명  재학생, 졸업생 합산 불가.
경희대 (800명)	고교대학연계	일괄 : 학생부교과 50 + 서류평가 50	· 최저 없음	인문 2명
				자연 3명
				예체능 1명
가톨릭대	사제 및 가톨릭계 학교장 추천 가능 (99명 + 의예 1명)	1단계 : 서류100  2단계 : 서류 70 + 면접30	· 최저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의대 학교장 추천 (24명)	1단계 : 서류 100 (5배수)  2단계 : 서류70 + 면접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영역 1등급, 한국사 4 이내</li> <li>· 과탐 2 과목 평균 (소수점 첫째 자리 버림)</li> </ul>	교당 1명

# 2018학년도 주요대학 학교장 추천 방법 및 추천 인원

대학명	전형명	전형방법	수능 최저	추천인원
국민대 (344명)	학교장 추천	일괄 : 교과30 + 서류 70	· 최저 없음	인원 제한 없음
동국대 (437명)	학교장추천	일괄 : 서류 100	· 최저 없음	인문 2명 (영화영상포함)
				자연 2명
건국대 (416명)	KU 학교추천	일괄 : 교과 40 + 서류 60	· 최저 없음	인원 제한 없음
KAIST (80명 내외)	학교장 추천	1단계 : 서류 100 (3배수) 2단계 : 서류 70 + 면접 30	· 최저 없음	교당 2명
DGIST (50명 내외)	미래브레인전형	1단계 : 서류 100 (3배수) 2단계 : 면접 100	· 최저 없음	교당 1명
GIST (30명 내외)	학교장 추천	1단계 : 교과 30 + 비교과 70 (4배수) 2단계 : 서류70 + 면접30	· 최저 없음	교당 2명
부산교대 (89명)	지역 인재 전형	1단계 : 서류 100 (2배수) 2단계 : 서류 60 + 면접 40	· 최저 없음	교당 3명

# 대학입학전형 학교장추천제대상자 선정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산고등학교에서 대학입학 전형 학교장 추천 입학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새로운 입시 전형 방식으로 대입전형에 채택되어 온 학교장 추천 전형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학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학생을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추천 기준)

- ①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비교과 영역 및 각 대학별로 제시한 학교장 추천 지원자격과 기준, 전형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 가능성을 가장 높게 예측할 수 있는 학생을 추천한다.
- ②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은 해당 대학의 성적 산출 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비교과 영역은 출결상황, 특별활동 상황, 봉사활동 상황, 수상 실적, 자기소개서, 지원학과 관련 소질과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③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산정은 당해 연도 해당 대학별 전형 방법과 요소에 준하여 동일한 환산비율만큼 선정위원회에서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④ 학교장 추천입학 대상의 기회 균등과 공평성을 위해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 간의 복수 추천자 선정은 제한할 수 있다. 단, 추천 희망자 인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피추천자 중 본교 입학 후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추천을 제외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임무)** 본 규정이 정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학입학전형 학교장추천제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고, 위원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 구성)

1. 위원장 : 교장
2. 부위원장 : 교감
3. 간사 : 진로진학부장
4. 위원 : 3학년 부장, 3학년 담임교사

### ②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간사(진로진학부)는 회의를 진행하고 3학년부장은 제반 실무 업무를 주관한다.
2. 위원은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당해 연도 해당 대학의 전형 기준을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 기준에 의해 추천 대상자를 평가한다.
3. 계열별로 분리하여 추천자를 선정할 경우,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위원장, 간사, 학년부장과 계열별로 나누어진 담임교사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4조 (추천 및 대상자 평가 절차)

- ① 추천 대상자 선발 및 선정 기준을 공고하고 희망 학생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추천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제반 사항을 평가,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적격자를 학교장이 선정한다.
- ② 대상자 선정은 각 대학별 추천 기준에 적합한 학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선발하되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추천입학 대상자의 선발기준은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선발 기준에 따른다.
  2. 위원장을 제외한 선정 위원은 피추천인에 대하여 대학별 평가 요소 중에서 계량화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하여 전형 평가 기준에 준하여 엄정히 평가하고, 항목별로 최고 득점과 최하 득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으로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자의 전국단위학력평가 성적을 토대로 판단한다.
  4. 지원자의 지원 상황(학과, 전형)을 고려하여 합격 가능권의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5.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학에서 추천 허용된 인원은 가능한 한 모두 추천한다.
  6. 추천 요구가 있는 해당 대학의 선발 기준이 막연한 경우 별도로 마련된 선발 기준에 따른다.
- ③ 졸업생 추천이 가능한 대학에 졸업생이 추천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정위원회에 직접 신청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별도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심의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 (기타 사항)

- ①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사안 발생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반 사안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결정되고 공고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부 칙

**제1조 (시행 시기)** 본 규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 제정 : 2004년, 1차 개정: 2008년, 2차 개정: 2010년, 3차 개정 : 2014년-제3조 일부개정)

**제2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 등은 위원회에서 발의, 심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기타)**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발의, 심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제2조 규정 일부를 개정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제3조 규정 일부를 개정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